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가단125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A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1. 2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2. 16. 접수
제62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인정 사실 원고는 2021. 2. 23. 주식회사 B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2.14%(변동 금리), 지연이자 연 6%,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23년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4. 4. 26.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은 181,337,310원(원금 177,913,065원 + 대지급금 1,405,951원 + 이자 1,771,349원 + 연체이자 246,94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금 177,913,065원과 이자 등의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주식회사 B의 사해행위

1) 인정 사실 주식회사 B은 2024. 2. 1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4. 2. 16.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B은 별지 재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763,228,000원과 소극재산 1,144,137,310원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2020. 1. 17.자 차용금채무 150,000,000원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주식회사 B의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주식회사 B의 재산상황,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회사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주식회사 B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권기백

별지